기후위기 심각한데…방재기상전문교육 '유명무실'

2018년 법제화에도 강제성·불이익 없어 광주·전남 수강생 매년 감소
광주시 담당자 지난해 단 2명 수강…교육 내실화하고 의무적 실시 필요

올해 여름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물폭탄 우려가 있다는 예보가 나왔지만,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청의 방재기상업무전문교육(방재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홍수·태풍·폭염·한파·가뭄 등 5대 기후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자체 공무원들과 공기업 담당자들의 방재(防災)교육 참여율이 한번도 충족된 적이 없는데다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보당 강은미(비례)의원이 기상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방재 기상업무 담당자 중 방재교육을 수강한 인원은 달랑 2명 뿐이었다. 지난 2020년 30명이나 수강한 인원이 2021년에는 9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는 2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전남도도 담당자들의 방재교육 수강자가 64명(2020년)→26명(2021)→25명(2022)으로 감소세지만 그나마 상황은 나았다.

방재교육은 지난 2018년부터 법제화 됐다. 기상법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방재업무 담당자가 대상이다.

방재교육은 2일 14시간 과정으로, 재난관리 체계와 기본법,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기상위성레이더 영상의 이해 등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방재 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담당한 날부터 1년 이내 들어야 하며 3년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광주지역에서 3년간 수강한 인원이 0명으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그해 30명으로 반짝 늘었지만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지자체 담당자뿐만이 아니다.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전남 지자체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교육 대상자에 비해 수강자가 매년 감소했다.

광주에서는 2020년 대상자의 82.8%(대상자 35명 중 29명 이수)가 방재교육을 받았지만 2021년 26.3%(38명 중 10명 이수)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6%(30명 중 14명 이수)만 방재교육을 수강했다.

전남도 지자체와 기관의 담당자 역시 2020년 42명 중 13명, 2021년 73명 중 32명, 2022년 55명 중 43명으로 대상인원을 한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처럼 방재교육을 듣지 않는 이유는 미이수자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방재교육을 듣지 않아도 담당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교육 이수자 선정을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기상청은 해당 교육의 대상자로 기상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자나 해당 기관에서 기상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수 대상자 선정은 관할기관에 맡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엔 교육 자체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광주시 남구청의 안전 관련 부서 관계자 5명에게 방재기상업무전문교육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광주시 서구청의 방재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해당 교육을 들어봤으나,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질 뿐더러 매년 교육이 비슷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재전문가들은 행정을 담당하는 방재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상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 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로 재난위기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처럼 의무적으로 방재 담당자들이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교육에 앞서 방재 담당자들의 역량을 체크하고 이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해 다음 교육에 활용하는 PDCA(Plan Do Check Act)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장은 이어 "방재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현재의 교육방식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순천대 공대 실험실서 화재
연기 흡입 연구보조원 부상

순천대 공과대학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실험중이던 70대 남성이 부상을 당했다.

25일 순천경찰과 순천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순천시 석현동 순천대 공과대학1호관 3층 실험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실험실에서 홀로 실험을 하던 대학 연구보조원 A(72)씨가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됐다. A씨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전기를 이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방전가공기계를 이용한 실험 중에 기계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물에 있던 학생들이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자체 진화 한 뒤 실험실 내부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후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징역 9년 선고

광주지법, 심신 미약 인정 안해

두번째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귀가중인 남자 어린이를 따라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 간의 취업제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3세 미만의 남자 어린이를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종 범죄로 2011년 징역형을 받고 2014년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했었다. 2019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출소 7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를 앓고 있지만, 약물복용을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었으며 범행의 발생·확대 위험성을 알고도 약을 중단해 자의로 충동조절장애를 방치한 점에서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행위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자인 아동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면서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같은 기간 추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전쟁 73주년…"위대한 헌신 감사" '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기념식'이 25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다. UN기와 태극기를 포함해 18개 참전국의 깃발을 든 기수들이 무대에 도열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직위상실형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때 도와 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군수는 1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입후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먼 친척관계인 B씨가 어렵게 살고 있어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입후보 의사는 확정적으로 표출된 후보뿐 아니라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경우에도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강 군수는 현금 제공 전부터 SNS에 지역행사 참석 및 홍보 내용을 게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광군수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100만원이 소액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부행위로 봐야한다 "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재판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임차인 거주로 무단증축 복구 지연 땐 이행강제금 감경"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무단 증축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지 못했다면 지자체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부동산 신탁주식회사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 광산구가 납부를 명령한 18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중 절반인 91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건물주 A씨 지난 2019년 2월 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겼다. 이후 A씨는 2020년 5월께 이 건물 1층 A동 한 호실의 전부에 대해 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내줬다.

같은 해 10월 광산구 소속 공무원은 1층 일부에 콘크리트 주택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 소유주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시정명령 사전통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거친 후 2022년 7월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탁회사에 18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소유권 등기와 달리 건물주는 A씨라는 점, 위반 건축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조치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신탁회사는 해체·개축·증축·수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이 사안은 최초 시정명령 전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임차인 때문에 무단 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